



제 420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4호)

2025.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2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 및 대량폐사 현상이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기본계획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u> <u>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u> <u>에 관한 사항</u>
<u>4. ~ 7.</u> (생 략)	<u>5. ~ 8.</u>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 지와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 목표,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어장환경 및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 및 보전 등을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항목 비교]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1.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 목표 3.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현행 포함항목과 같음

현행법상 기본계획 포함항목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항목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 및 보전 6. 어촌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업·어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u>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u>

□ 최근 기후변화¹⁾로 인한 이상수온, 적조 등으로 인해 국내 어획량이 감소하고 해양환경변화에 민감한 수산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내 어획량은 1980년대의 151만톤에서 2000년대 116만톤, 2020년대 93만톤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수온 상승 시 감소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양식업의 경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적지가 축소되고 있고, 기존 양식장의 폐사율 및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고수온 특보 발령일수는 71일로 2020년의 3배이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도 특보도입(2017년)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로 조사²⁾되고 있음.

1)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968년부터 2023년까지 동 기간 세계 평균 대비 2배 이상인 약 1.44℃ 상승하였는데, 수온 1℃ 변화가 수산생물에게는 5~10℃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2) 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액은 약 1,159억원으로 특보도입 이후 평균 피해액의 4배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출처 : 해양수산부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 이처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수산업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및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5년 단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현재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³⁾을 보면 수산업을 둘러싼 거시환경 변화 중 하나로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따른 목표와 세부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바다생태계 복원’, ‘기후변화 대응·적응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⁴⁾하고 있는 등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와 별도로 명시적으로 기본계획의 항목으로 포함하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현행법 제7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 관한 대응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다면 지역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실태 파악과 지역 특색에 맞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3) 해양수산부,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

4)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목표, 전략, 추진 과제,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측면이 있음.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에 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 그 밖에 국립수산물과학원에서 수산분야 기후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2015년~현재) 중이나, 해당 평가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문 의 처
02)6788-5422

4. 비전 및 목표



<그림 6-6>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5대 목표, 10대 전략, 30대 추진 과제, 90대 세부 과제

I.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관리체계로 재정비	II.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산물 공급	III. 활력 있는 일터 행복한 삶터 조성	IV. 수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V.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1.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비한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3. 지속가능 수산물 역가리시스템 구축	5. 활력 있는 일터 마련	7. K-브랜드 활용 글로벌 경쟁력 강화	9. 수산업의 스마트 산업화
11.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연안어업 자원 회복	31. 수산물 자급률 관리 개선 및 수급 안정화	51. 어촌산업 활성화	71. 수산물 수출지원 강화	91.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11.1.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으로 재편 11.2. 연안어업 구조 및 제도 개선 11.3. 국내 불합법 어업 감시망 구축 및 관리 강화	31.1. 주요 수산물 중심으로 자급률 관리 개선 31.2. 대중량 어종 수급관리 안정화 31.3. 양식수산물 수급 안정화	51.1. 어촌 융복합 산업 육성 51.2. 사회적 수산 경제조직 육성 51.3. 어업인프라 공유 기반 구축	71.1. 수산식품 품질 경쟁력 강화 71.2. 해외시장 확대 및 안정도 향상 71.3. 비대면 수출 지원 체계 마련	91.1. AI 기반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 개발 91.2. ICT 기술 접목 양식생산체계 구축 91.3. 안전관리형 스마트 어항 조성
12. 양식업을 집약 생산 체계로 전환	32. 수산물 유통·안전관리 강화	5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휴식·교양환경	72. 국제무역 환경향상에 선제적 대응	92. 스마트기술 활용 기반 사업화
12.1. 종합적 배양 양식 체계 구축 12.2. 양식산업 표준 마련 및 생태계 구축 12.3. 양식 관리제도 개선 및 자원형 양식 양식화	32.1. 선제적인 수산식품 위해도 안전관리 32.2. 원산지 및 이력관리 강화 32.3. HACCP & Spoke 시스템 구축	52.1. 어업인 안전채널 운영망 강화 52.2.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도 강화 52.3. 어촌의 종사자 고용 개선 및 주거지원	72.1. WTO, FTA 등 수산업에 대응 72.2. 국제무역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72.3. 수출 비관세장벽 대응	92.1. 비대면 수산물 유통 확대 92.2.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 92.3. 수요처별 맞춤형 수산물 소비체계 구축
13. 원양산업 조업 환경 개선	33. 수산물 생산·소비자 상생협력 체계 구축	53. 어업인 소득·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73. 해역 진출 확대	93. 전주기 다각화 및 기반 조성
13.1.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13.2. 원양어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 확대 13.3. 지역수산업자간 협력 강화	33.1. 자원관리형 수산식품 생산·유통·판매·소비 체계 확립 33.2. 수산물 구매비 지원 추진 33.3. 공공부문 급식 등 수산식품 공급 확대	53.1. 어업인안전원 복지 서비스 개선 53.2.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도 강화 53.3. 어선 어업인 복지 및 육성 지원	73.1. 해역개발 계획 등 지원 73.2. 수산업 해역 진출 지원 73.3. 국제수산 전문인력 양성	93.1.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통합 93.2. 수산물 다각화산업화 구축 93.3. 다각화 관련 산업화 법규제 대응
2.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수산업 생산 환경 조성	4 (코로나19 이후) 수산물·수산물업의 적응력 강화	6.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터 조성	8. 국제규범 이행 및 협력 강화	10. 수산업 산업을 육성 및 창업 지원
2.1. 기후변화 대응 바다생태계 복원	4.1. 소비자 친화적 유통 인프라 혁신(H/W)	6.1. 어촌 공동체 유지 강화	8.1. 국제규범 이행	10.1. 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2.1.1. 연안 생태계 건강성 향상(바다숲 조성 등) 2.1.2.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 인양·식지 조성 2.1.3. 건강한 수산종자 양육을 위한 인공초 확대	4.1.1. 친환경 양식시스템 사업 추진 4.1.2. 산마·소매자 유통시설 현대화 4.1.3. 활판어 종합 유통시스템 마련	6.1.1. 어촌형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6.1.2. 공동체 지아네트워크 구축 6.1.3. 주아·주촌 경영지원 강화	8.1.1. IUU어업 관리 강화 8.1.2. 민간양식사업 대응 강화 8.1.3. 해양보호유전체보호 등 양어장 대응 강화	10.1.1. (종자·관상어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 10.1.2. 어선원도 생활개선 지원 10.1.3. 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2.2. 환경오염 대응 수산업 생산 환경 정비	4.2. 수산물의 유통 조성가능 강화(S/W)	6.2. 지역주도의 어촌·어항 재형	8.2. 국제규범 공조 확대	10.2. 수산업의 전주기 지원
2.2.1. 청정어장 조성사업 및 어항 정비 2.2.2. 양식장 배양수처리 저감(스트로울 부표 등) 2.2.3. 연안어업 어구관리 체계 전환	4.2.1. 신선유통체계 지원 4.2.2. 수산물 표준규격 개선 4.2.3. 수산식품 가공·포장지원	6.2.1. 어촌뉴딜사업 내실화 6.2.2. 유류공원을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6.2.3. 참어촌 에너지 지원 사업 조성	8.2.1. 동북아 불합법 어업 단속 협력 강화 8.2.2. 남북수산물교류사업 추진 8.2.3. 다자 원조사업 확대	10.2.1. 스마트형 생산모형 마련 10.2.2.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운영 10.2.3. 글로벌 수산물 체계적 육성
2.3. 수산부문 규제 대응 강화	4.3. 소비자 맞춤형 수산식품산업 육성	6.3. 어촌자 중심의 어촌사업 확대·개입	8.3. 수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10.3.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 공간 마련
2.3.1. 기후변화 대응 적응 기술개발 2.3.2. 양식장 유해생물 출현 및 확산 예측 고도화 2.3.3. 해역 환경성 평가 및 재해피해 최소화	4.3.1.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4.3.2. 맞춤형(IFS 등) 특수목적형 생태형 수산식품 개발 4.3.3. 지역특화 수산식품 가공 산업화	6.3.1. 특화어항 유형 재편 및 확대 지원 6.3.2. 청정어항 사업 추진 및 확대 6.3.3. 어촌어항 환경정비	8.3.1.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8.3.2. 생산분야 에너지절감 지원 8.3.3. 친환경 어선 기술개발 확대	10.3.1.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공간 조성 10.3.2. 과학산업·융합형 어항시설 확충 10.3.3. 자원 관리 안전을 도모한 낚시 활성화